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사전대비와 대피 명령을 위한 상황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사태예측정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o.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추가(안 제32조의6제1항, 별표 3의2 신설)
 -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서 ‘예비경보’를 추가 운영하고, ‘예비경보’ 시 상황판단회의 및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기준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강우량, 지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토양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u>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u>	<u>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u>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 중 “산사태예측정보”를 “별표 3의2의 산사태예측정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중전의 별표 3의2)의 주의의 발령기준란 중 “15%”를 “15퍼센트”로 한다.

별표 3의3(중전의 별표 3의2)의 경계의 발령기준란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별표 3의3(중전의 별표 3의2)의 경계의 발령기준란 중 “15%”를 “15퍼센트”로 한다.

별표 3의3(중전의 별표 3의2)의 심각의 발령기준란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별표 3의3(중전의 별표 3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 및 기준(제32조의6제1항 관련)

산사태예측정보는 기상청 강우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종 류	기 준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강우량, 지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토양이 수용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구분	발령기준	조치기준
관심	○ 산사태 빈발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재난관리자원 정비 ○ 비상연락망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정비
주의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입산통제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경계	○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 주민대피 명령
심각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 피해대책 마련

<비고>

1. 산림청장은 산사태 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산사태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발령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산사태예측정보</u> 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 ----- ----- <u>별표 3의2의 산사태예측정보</u>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 기준은 <u>별표 3의2</u> 와 같다.	④ ----- ----- ---- <u>별표 3의3과</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연 락 처	(042) 481 - 8844